

※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사항

- 재당첨제한, 주택소유등 부적격자는 추천기관에서의 선정통보와 무관하게 계약이 불가함
- 당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가 개별 공고되므로 해당 주택형별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람.
- 본 안내문은 ‘하남포웰시티’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특별공급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자료로 인허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.
-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1.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치 :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지구 내 B6블록
- 공급규모 : 아파트 9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분양문의 :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Tel. 1577-5811

구분	일정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18. 04. 26(목) 예정	힐스테이트 홈페이지
견본주택 오픈	2018. 04. 27(금) 예정	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-9
특별공급접수	2018. 05. 02(수) 예정	견본주택 현장접수 10:00 ~ 14:00
당첨자 발표	2018. 05. 02(수) 예정	18:00 이후 (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
동 · 호수발표	2018. 05. 11(금) 예정	17:00 예정 (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
계약체결	2018. 05. 23(수) ~ 05. 29(화) 예정	견본주택 10:00~16:00 (5일간, 주말 제외)

※ 상기 일정은 인허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필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.

2. 해당기관 특별공급 세대수

구분	지역	주택형		
		73㎡	84㎡	합계
장애인	인천광역시	3	3	6

- ※ 상기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- ※ 하남 포웰시티는 우선 공급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함.

기준일	지역 우선공급 비율			지역 우선공급 거주요건		
	하남시	경기도	수도권	하남시	경기도	수도권
입주자모집 공고일	30%	20%	50%	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	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	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자

3.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‘무주택세대 구성원’으로서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.

구분	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공통	-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 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- 투기과열지구,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 04. 26)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함 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(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※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자 제외
자격요건	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, 장애인,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대상자등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 불가]
공급대상 제외자	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 아닌 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- 특별공급 신청 서류,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-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 하는 경우 (ex:본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& 배우자 다자녀특별공급 중복 신청, 모두 부적격)

4. 구비서류

필요서류		내용	
본인	필수	특별공급신청서	견본주택 비치
		무주택서약서	견본주택 비치
		신분증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용도 : 특별공급 신청용
		주민등록표등본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
		주민등록표초본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		가족관계증명서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상세 발급
		청약통장잔위 확인서	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제외
	해당자	기관장 추천서	해당기관에서 추천자를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
대리인 추가서류		위임장	청약자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)
		청약자의 인감증명서	특별공급신청 위임용
		대리인 신분증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등, 재외동포: 국내거소 신고증,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
		대리인 인장	-

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04.26)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.
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.

5. 유의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당첨이후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함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.)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(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) 사항은 추천시 재검중하여 주시기 바람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신청하여야하며,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로 선정 되지 못하며, 계약 또한 불가 함. 이 경우 배정되었던 세대는 차순위인 일반공급으로 전환됨.
- 신청한 주택형의 동·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 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.
- 타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간 중복신청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.
-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1순위 중복 청약을 하였을 경우 선순위인 특별공급만 인정됩니다.
- 타 사업지와 당사 중복청약은 가능하나, 당첨자 발표일이 먼저인 사업지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. 단, 당첨자 발표일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됨.
- 공급금액, 전매 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

6 광역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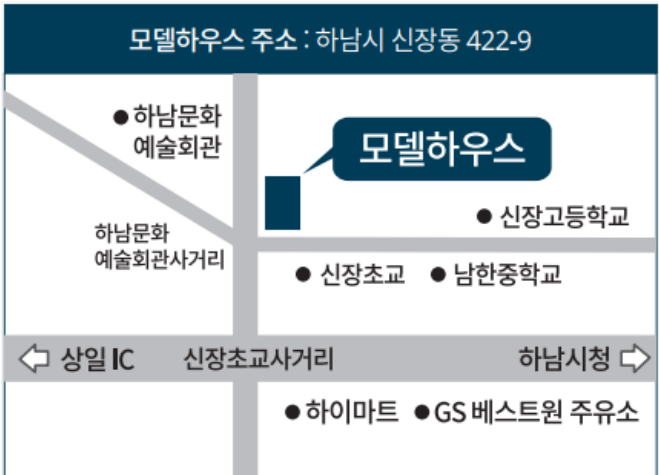


※ 상기 지역도 및 CG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7. 조감도 및 견본주택 약도



▲ B6 조감도(C2,C3조감도 생략)



▲ 분양문의 1577-5811